

[별표 1]

**품질 · 성능 평가기준**

(제4조 관련)

시험항목	품질·성능 평가기준	시료수 <sup>1)</sup>
1. 특성 시험	부품의 기준규격을 만족할 것.	3
2. 환경시험	고온·고습 시험을 실시한 후 부품 기준 규격 값의 $\pm 30\%$ 를 만족할 것.(별도의 샘플에 대하여 적용한다.)	2
	고온(내열성) 시험을 실시한 후 부품 기준 규격 값의 $\pm 30\%$ 를 만족할 것.(별도의 샘플에 대하여 적용한다.)	2
	저온(내한성) 시험을 실시한 후 부품 기준 규격 값의 $\pm 30\%$ 를 만족할 것.(별도의 샘플에 대하여 적용한다.)	2
	온도 급변 시험을 실시한 후 부품 기준 규격 값의 $\pm 30\%$ 를 만족할 것.(별도의 샘플에 대하여 적용한다.)	2

- 1) 재제조제품의 품질·성능·평가시험에 사용될 시료는 원칙적으로 최종 출하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공정인 경우 가장 최근에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양산품 중 **KS Q 1003** (랜덤 샘플링 방법)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.